#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태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025

발의연월일: 2024. 9. 13.

발 의 자:김태년 ·김영배 ·김준형

김태선 · 권칠승 · 한민수

송기헌 • 박홍배 • 정준호

염태영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의 장기재 직을 유도하기 위해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하고,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 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이를 근거로 2018년부터 시행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재직 촉진 및 자산 형성에 효과적이었음 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 종료되고 현재는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내일채움공제 사업만 운영되고 있어,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를 위한 성 과보상공제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한 근거 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하여금 중소기업, 청년근로자 및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장기재직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성과보상공제사업을 운영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

써 안정적인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재직 및 자산형성에도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35조의8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장의2에 제35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5조의8(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공제사업)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35조의5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,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장기재직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공제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은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, 가입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적립금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정할 수 있다.
-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35조의8(중소기업 청년근로자
	공제사업) ① 중소벤처기업진
	흥공단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
	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고 자산
	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35
	조의5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,
	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정부
	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장기재
	직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
	공제금을 지급하는 공제사업을
	<u>운영하여야 한다.</u>
	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은
	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
	중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를
	대상으로 하고, 가입기간은 5년
	이상으로 한다.
	③ 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적립
	금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
	차등적으로 정할 수 있다.
	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공제
	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
	대통령령으로 정한다.